



현안보고서

제31호 2009. 7. 9

| 발간등록번호 31-9735024-000636-14 |

Vol. 31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Vol. 31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R e s e a r c h S e r v i c e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경제산업조사실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 주 규 준

Tel: 788-4582 / Fax: 788-4599

E-mail: jkj@assembly.go.kr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임 동 춘

차 례

□ 요약

| | |
|-----------------------------------|----|
| I. 서론 / 1 | |
| II.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 3 | |
| III.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 추진현황 / 5 | |
| 1. 우리나라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발전과정 | 5 |
| 2.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현황 | 9 |
| 가. 개관 | 9 |
| 나. 사적 구제제도 | 10 |
| 다. 법적 구제제도 | 14 |
| IV. 주요국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 / 18 | |
| 1. 미국 | 18 |
| 가. 사적 구제제도 | 18 |
| 나. 법적 구제제도 | 19 |
| 2. 영국 | 20 |
| 가. 사적 구제제도 | 20 |
| 나. 법적 구제제도 | 20 |
| 3. 독일 | 21 |
| 가. 사적 구제제도 | 21 |
| 나. 법적 구제제도 | 21 |
| 4. 일본 | 22 |
| 가. 사적 구제제도 | 22 |
| 나. 법적 구제제도 | 23 |
| 5. 시사점 | 24 |

V.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6

| | |
|---|----|
| 1. 문제점 | 26 |
| 가.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의 미흡 | 26 |
| 나. 신용회복기금의 법적 근거 미비 | 26 |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적 보완사항 | 27 |
| 2 개선방향 | 28 |
| 가.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의 활성화 | 28 |
| 나. 신용회복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 30 |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 | 31 |

□ 참고문헌

표 차례

| | |
|--|----|
| [표 1]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연도별 추이 | 3 |
| [표 2]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금융권별(단일업권) 변동 추이 | 4 |
| [표 3] 금융채무불이행자(복수업권) 등록 변동 추이 | 4 |
| [표 4]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연혁 | 8 |
| [표 5] 개인워크아웃제도와 사전채무조정제도의 비교 | 11 |
| [표 6] 워크아웃제도 신청 및 조정 추이 | 12 |
| [표 7] 개인회생 신청 및 인용 변동 추이 | 15 |
| [표 8]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 변동 추이 | 16 |
| [표 9] 현행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제도의 비교 | 16 |
| [표 10] 주요국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 25 |

그림 차례

| | |
|-------------------------------|---|
| [그림 1] 현행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체제도 | 9 |
|-------------------------------|---|

요 약

- 2009년 4월말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수는 약 217만명으로, 2004년 정점(361만 5천명)에 도달했을 때보다는 감소된 상태이지만,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 부동산 담보채무의 부실화 등으로 인하여 개인신용위기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금융권별 분포는, 2009년 4월말 현재 은행업권에 약 110만 3천명, 신용카드사에 약 55만 5천명, 기타 금융업권에 약 245만 9천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9년 4월말 기준 2개 이상의 기관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수(114만 7천명)는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217만명)의 약 52.8%에 달하며, 3개 이상의 경우(68만 5천명)는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약 31.5%에 달함
-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을 회복하여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체도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제도는 크게 사적 구제제도와 법적 구제제도로 나눌 수 있음
 - 사적 구제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사전채무조정제도, 배드뱅크를 통한 구제(채권집중 프로그램), 개별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구제 프로그램이 있음
 - 법적 구제제도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소비자파산제도가 있음
-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별로 민간, 정부 및 법원의 역할 분담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사적 구제제도와 법적 구제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사적 구제제도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한 개인채무자 구제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법적 구제제도로는 「파산법」을 통한 구제와 채무자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재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사적 구제기구로서 소비자상담국과 CCCS(Consumer Credit Counselling Service)가 활동 중이며, 법적 구제제도로는 「파산법」과 청산 이전의 공적 개인워크아웃제도인 자발적 정리절차가 있음
- 독일은 특별한 사적 구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법적 구제제도인 「파산법」에서 파산신청시 채무자는 재판이외의 방법으로 채권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일본에서는 사적 구제제도로써 민간단체인 일본크레디트카운슬링협회(JCCA)가 활동하고 있으며, 법적 구제제도로는 「민사재생법」, 「파산법」, 「특정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조정에 관한 법률」이 있음

□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문제점

-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의 미흡
 - 신용상담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자신의 신용상태에 맞는 구제수단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움
 - 다양한 기관이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참여유발요인이 적어서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예방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신용회복기금의 법적 근거 미비
 - 현행 신용회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KO)가 자산관리자로서 신용회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에 불과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적 문제점
 - 외국과 달리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절차 이전에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재판 외 채무조정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있음
 - 자동중지제도, 절대우선의 원칙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신용회복 절차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의 활성화

-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등록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상담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법적 구제절차 신청시 신용상담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의 제도적 준비를 통한 신용상담소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구제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아직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의 신용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금융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용회복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 채무자 구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정기금화의 필요성이 있음
- 법정기금화에 앞서 기금의 재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주체의 적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법적 구제절차의 정비

-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와 재판 외 분쟁처리절차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 파산절차 개시 전의 합의형 사전절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동중지제도, 절대우선의 원칙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I. 서론

- IMF 외환위기 이후 내수진작을 위해 가계신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면서 발생한 과도한 개인신용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부실 등과 맞물려 신용카드대란으로 상징되는 개인신용위기를 심화시켰음
 - 2004년에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361.5만명에 이르러 최고점에 달함
 - 이후 배드뱅크를 비롯한 채권집중프로그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화된 법적 구제제도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 수가 감소된 상태임
 -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 부동산 담보채무의 부실화 등으로 인하여 개인신용위기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을 회복하여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제도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채무불이행의 증가는 관련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위협하고 민간소비의 부진을 야기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되므로 신용회복을 통하여 안정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무분별한 신용회복 정책은 당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나아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원정책이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여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 신용회복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적 구제제도와 법적 구제제도간 연계가 미흡하고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II.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 2009년 4월말 현재 국내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약 217만명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지만, 금융위기의 여파로 향후 그 수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금융채무불이행자수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4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 2002년 신용카드 남발의 여파로 금융채무불이행자 수가 2003년에 급증
- 2004년 이후 정부가 각종 제도정비를 통해 신용불량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그 수가 감소세로 전환

[표 1]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연도별 추이

(단위: 만명)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4월말 |
|-------|-------|-------|-------|-------|-------|-------|-------|-------|-------|-------|-------------|
| 193.0 | 199.6 | 208.4 | 245.0 | 263.6 | 372.0 | 361.5 | 297.6 | 279.6 | 258.3 | 227.1 | 217.0 |

주: 2005년 4월 28일 이후 연체자 등록기준 변경 (30만원 초과 3개월 연체 및 30만원 이하 연체 3건에서 50만원 초과 3개월 연체 및 50만원 이하 연체 2건으로 변경)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 금융권별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분포²⁾를 보면 2009년 4월말 현재 은행업권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수가 약 110.3만명, 신용카드사의 경우 약 55.5만명, 기타 금융업권의 경우 약 245.9만명으로 집계됨
- 특히 기타 금융업권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수가 전체 등록수의 60%에 달한다는 점에서 고금리에 따른 회생의 어려움과 불법추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수도 상당하리라는 추측이 가능함

- 1) 2005년 4월 28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면서 기존의 '신용불량자'라는 명칭 대신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명칭이 사용됨
- 2) 업권별로 중복이 가능하여 단순 금융채무불이행자 집계보다 많은 수가 나타남

[표 2]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금융권별(단일업권) 변동 추이

(단위: 만명)

| 구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4월말 |
|-----------|-------|-------|-------|-------|-------|-------|-------|-------------|
| 은행업 | 175.8 | 233.7 | 260.6 | 180.1 | 164.5 | 145.7 | 119.3 | 110.3 |
| 신용 카드업 | 113.4 | 178.5 | 140.5 | 98.3 | 87.2 | 77.7 | 70.3 | 55.5 |
| 기타 금융업 | 216.7 | 447.8 | 484.6 | 328.7 | 325.9 | 310.1 | 266.2 | 245.9 |

주: 중복 여부를 불문하고 업체별 등록수를 전부 합산한 수치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 2009년 4월말 기준으로 복수업권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을 보면 2개 이상의 기관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수는 약 114.7만명으로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약 52.8%에 달하며, 3개 이상의 기관의 경우도 약 68.5만명으로 약 31.5%에 달함

[표 3] 금융채무불이행자(복수업권) 등록 변동 추이

(단위: 만명)

| 구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4월말 |
|------------|-------|-------|-------|-------|-------|-------|-------|-------------|
| 1개기관 | 91.7 | 108.3 | 98.6 | 123.1 | 113.9 | 105.8 | 98.9 | 102.3 |
| 2개기관 | 52.2 | 67.2 | 61.4 | 66.7 | 61.0 | 56.1 | 47.4 | 46.2 |
| 3개기관 이상 | 119.7 | 196.5 | 201.5 | 107.8 | 104.7 | 96.3 | 80.8 | 68.5 |
| 합계 | 263.6 | 372.0 | 361.5 | 297.6 | 279.6 | 258.3 | 227.1 | 217.0 |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Ⅲ.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 추진현황

1. 우리나라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발전과정

- 2002년 1월 금융감독원이 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을 계획
 - 일부 변제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상환불능에 처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공동협약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함
- 2002년 10월 1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업무 개시
- 2003년 3월 개별금융기관들이 신용회복지원 개시
- 2003년 11월 1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출범
- 2004년 3월 정부, 신용불량자종합대책 발표
 - 소액 신용불량자는 개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다중채무자는 배드뱅크(다중채무자의 부실 채권 집중기관)를 통해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2004년 3월 22일 「개인채무자회생법」 제정
 - 2005년 3월 3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동법 폐지
- 2004년 5월 20일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와 금융회사가 공동출자하여 배드뱅크(한마음금융) 설립
 -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임
 - 한마음금융은 2004년 5월 20일부터 6개월간 운영된 뒤 종료됨
 - 현재 희망모아에서 한마음금융의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배드뱅크 운영중임

- 2004년 9월 23일 개인회생제도 시행
 -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임
- 2005년 3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돕기 위해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을 통합함
- 2005년 3월 23일 재정경제부,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방안 발표
 - 기초수급자중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상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재조정 신청자에 대해 지원하되, 이들의 신용불량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부문과 금융기관이 손실을 분담
 -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은 상환을 유예하고,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토록 함
 - 청년층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창구로 하여 신청자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지원
 - 실업·군복무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청년층 등의 경우에는 취업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최장 2년간 원금상환을 유예
 - 취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확보되면 원금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토록 하고, 이자는 원금을 약정기간 내 상환하면 면제
- 2005년 4월 1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가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채무 재조정 업무 개시 (2005.11.8일까지)
- 2005년 4월 28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 2005년 5월 16일 배드뱅크 희망모아 설립 및 업무 개시

- 2006년 11월 13일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지원 업무 개시
- 2008년 6월 정부, 국민연금 신용회복제 시행
 - 자활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부금을 청산해주는 제도
- 2008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발표
 - 신용회복기금 설치,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성, 소액서민금융 재단을 통한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민간부문의 금융소외자 지원 활성화,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 제정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함
- 2008년 9월 2일 신용회복기금 출범
- 2008년 12월 19일 신용회복기금, 채무재조정 및 전환대출 시범사업 (1천 만원 이하) 개시
- 2009년 2월 2일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지원범위를 3천만원 이하로 확대
- 2009년 2월 23일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 착수
- 2009년 3월 12일 정부,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발표
 - 저소득층 학생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은 학교 졸업 후 2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포함
 - 저소득층 미취업자는 학자금 대출액 원리금 납부를 1년 간 한시적으로 유예
- 2009년 4월 1일 정부,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 워크아웃, Pre-Workout) 시행
 - 경제금융대책회의의 논의를 거쳐 1~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간 협약을 통해 사전채무조정제도를 1년간(2009년 4월 13일~2010년 4월 12일) 한시적으로 운영

[표 4]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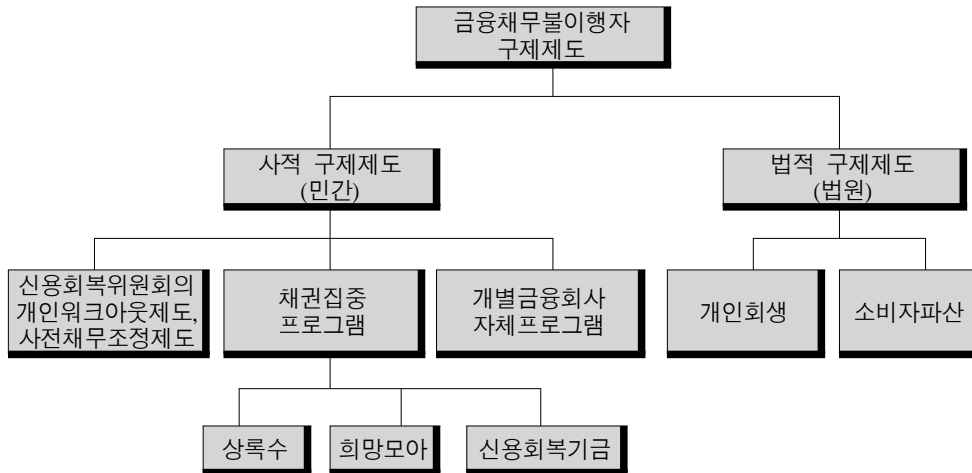
| 일 자 | 담당기관 | 내 용 |
|-------------|-----------|-------------------------------|
| 2002. 1. | 금융감독원 | 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 계획 |
| 2002.10. 1. | 신용회복지원위원회 | 업무 개시 |
| 2003. 3. | 개별금융기관 | 신용회복지원 개시 |
| 2003.11. 1. | 신용회복위원회 | 출범 |
| 2004. 3. | 정부 | 신용불량자종합대책 발표 |
| 2004. 3.22. | 국회 | 「개인채무자회생법」 제정 |
| 2004. 5.20. | 자산관리공사 | 배드뱅크(한마음금융) 설립 |
| 2004. 9.23. | 법원 | 개인회생제도 시행 |
| 2005. 3. | 국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
| 2005. 3.23. | 정부 |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방안 발표 |
| 2005. 4. 1. | 신용회복위원회 |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채무 재조정 업무 개시 |
| 2005. 4.28. | 정부 |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
| 2005. 5.16. | 자산관리공사 | 배드뱅크 희망모아 설립 및 업무 개시 |
| 2006.11.13. | 신용회복위원회 | 소액금융 지원 업무 개시 |
| 2008. 6. | 정부 | 국민연금 신용회복제 시행 |
| 2008. 7.24. | 금융위원회 |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발표 |
| 2008. 9. 2. | 신용회복기금 | 출범 |
| 2008.12.19. | 신용회복기금 | 채무재조정 및 전환대출 시범사업 개시 |
| 2009. 2. 2. | 신용회복기금 | 전환대출 지원범위를 3천만원 이하로 확대 |
| 2009. 2.23. | 법무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작업 착수 |
| 2009. 3.12. | 정부 |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발표 |
| 2009. 4. 1. | 정부 |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 시행 |

2.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현황

가. 개관

-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제도는 크게 사적 구제제도와 법적 구제제도로 나눌 수 있음³⁾
 - 사적 구제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사전채무조정제도 (프리 워크아웃), 채권집중 프로그램인 상록수, 희망모아, 신용회복기금, 개별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구제프로그램이 시행중에 있음
 - 법적 구제제도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소비자파산제도가 있음

[그림 1] 현행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제도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3)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제도는 사적 구제제도와 공적 구제제도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공적 구제제도는 일반적으로 법원을 통한 법적 구제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사적 구제제도와 법적 구제제도로 구분하기로 함

나. 사적 구제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제도

-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공동협약에 의거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지원협약(금융회사간 공동 자율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고, 3개월 이상 연체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 가능
- 개인워크아웃대상자는 이자 전액면제, 상각채권⁴⁾인 경우 원금 최대 50%까지 감면, 최장 8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채무조정안 확정시 채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모든 '연체 등' 정보등록 해제 등의 지원을 받음
-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10월 1일 출범 후 2009년 4월 30일까지 총 약 81만 명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접수하여 이중 약 76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완료

○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 워크아웃, Pre-Workout)

- 단기 연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한시적 채무조정제도
- 2009년 4월 13일부터 2010년 4월 1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모두 포함해 5억원 이하를 대출받고 30일 초과~90일 미만 연체한 채무자가 대상
 - ◆ 지원을 받으려면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안에 받은 신규 대출금의 비중이 총 대출금의 30% 이하여야 하고,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의 상환 비율(DTI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 보유 자산 가액(주택공시 가격) 6억원 미만, 실직, 휴업, 폐업, 소득 감소

4) 채무자의 파산, 행방불명, 사망 및 재해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서 채권자가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채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 ◆ 여러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만 연체했어도 전체 대출에 대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음
- 연체 이자를 탕감 받으며 신용대출금은 최장 10년, 담보대출금은 최장 20년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하게 됨
- 이자율은 기존 대출의 70% 수준에서 적용되지만 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되고 이 기간 동안 이자율은 연 3% 정도
- 2009년 4월 13일 시행 이후 4월말 현재까지 총 2,945건이 완료됨

[표 5] 개인워크아웃제도와 사전채무조정제도의 비교

| | 개인워크아웃제도 | 사전채무조정제도 |
|-----------|--|---|
| 시행시기 | 2002년 10월 | 2009년 4월 13일~2010년 4월 12일 (한시적) |
| 운영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 신청 시 연체기간 | 3개월 이상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 채무금액 | 1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5억원 이하 대출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5억원 이하 대출(다중채무자) |
| 기 타 신청조건 | 신청 전 최근 8개월 내에 신규 대출액이 전체 채무의 30% 이하일 것 | -신청 전 6개월 내에 새로 대출받은 금액이 전체 대출액의 30%이하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이 30% 이상 -보유재산이 6억원 미만 |
| 원금감면 | -금융회사가 손실처리한 채권은 50% 감면 -성실하게 상환하면 10% 감면 | 원금감면은 없음 |
| 연체이자 | 면제 | 면제 |
| 대출 약정이자 | 면제 | 약정이자의 70% 수준까지 인하 가능, 최소 연5% 한도 |

<계 속>

| | 개인워크아웃제도 | 사전채무조정제도 |
|------------|---|--|
| 채무 상환유예 | -실업 등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할 때 1년 이내 범위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연 2% | -실업 등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할 때 1년 이내 범위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연3% |
| 연체 정보 |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금융채무불이행’ 대신 ‘신용회복지원 중’으로 표시 | 등록되는 내용 없음 |
| 상환기간 | 최장 8년 | -담보가 없는 채권은 최장 10년 -담보채권은 최장 20년 |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표 6] 워크아웃제도 신청 및 조정 추이

(단위 : 명)

| 구 분 | 2002.11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4월말 | 합 계 |
|-------------|------------------|---------|---------|--------|--------|--------|-------------|---------|
| 신청자 | 63,055 | 287,352 | 193,698 | 85,826 | 63,706 | 79,144 | 36,374* | 809,155 |
| 채무조정 완료자 | 35,542 | 268,451 | 208,231 | 86,890 | 61,597 | 73,264 | 25,191 | 759,166 |

* 사전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 : 2,945건 포함(2009년 4월 13일 시행)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 채권집중 프로그램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여러 금융회사 채무를 한 곳으로 집중하여 효과적인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0개 금융회사)가 공동 참가하여 설립되었으며, 채권금융회사로부터 개인채무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이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5) 은행권에서는 국민, 기업, 우리, 조흥, 하나은행이 참여하였으며, 카드사로는 LG, 삼성, 신한, 외환, 현대가 참여함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참여하여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에 의한 신용회복지원도 병행
- 상륙수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서 매입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자 감면(원금감면은 없음) 및 상환기간 연장(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을 지원
 -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최장 8년 이내에서 분할상환하며, 최대 50% 까지 원금감면이 가능
-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05년 5월 한마음금융(주)이 미신청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회사 공동 채권추심 및 신용회복지원 기구
 - 채권금융회사(30개)로부터 개인채무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ABS 채권을 발행하며, 채무자⁶⁾의 신청에 따라 원금의 3% 선납 후 잔여 채무에 대해 최장 8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하도록 지원
- 신용회복기금
 - 2008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9월 2일 설립된 금융소외자 지원기구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자산관리자로서 기금을 관리·운영
 - ◆ 연체채권 매입을 통한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환승(대출보증), 자활지원네트워크 운영이 주업무
 - 신용회복기금과 채무재조정 관련 협약을 체결한 대출회사⁷⁾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를 재조정
 - ◆ 금융기관, 등록 대부업체의 3천만원 이하 채무를 대상으로 함
 - ◆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 장기 분할 상환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채무상환을 유예

6) 희망모아에서 매입한 채무(30개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7) 은행 16개, 신용카드사 8개, 저축은행 17개, 등록대부업체 23개사

-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⁸⁾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환승론) 지원
-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사람으로서 대출회사(캐피탈, 등록대부업체 등)에 원금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 30% 이상 금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정상상환하고 있는 경우, 30% 초과금리 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20% 내외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
-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중 출연 원금을 제외한 잉여금 중 금융기관 배분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데, 총 22개 금융기관이 2009년 1월 5일자로 5천억원을 출연함

□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 주요은행 등에서 소액채무(통상 1,000만원 이하)에 대하여 자체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를 일부 감면하되, 일시상환을 추구함

다. 법적 구제제도

□ 개인회생제도

-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개인채무자회생법」⁹⁾에 따라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법적 채무조정제도
- 채무자가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최장 5년간 일정한 금액의 변제를 완료한 경우 잔여채무에 대해 법원의 직권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면책을 결정함
- 채무의 발생 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등 파산원인이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함

8)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은행

9)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과 함께 2006년에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

-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 여부, 변제계획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며, 채무자가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최장 5년간 일정한 금액의 변제를 완료한 경우 잔여채무에 대해 직권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면책을 결정함
- 2008년의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총 47,874건이며 이중 40,994건이 인용되었고 2009년 4월말 현재까지 총 20,188건의 신청 중 14,291건이 인용되었음

[표 7] 개인회생 신청 및 인용 변동 추이

(단위: 건)

| | 2004.9.23~ 2004.12.31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4월말 |
|----|--------------------------|--------|--------|--------|--------|-------------|
| 신청 | 9,070 | 48,541 | 56,155 | 51,416 | 47,874 | 20,188 |
| 인용 | 2,506 | 33,706 | 49,028 | 46,184 | 40,994 | 14,291 |

자료: 법원행정처

□ 개인파산

-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
- 신청대상은 기본적으로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지급불능에 처한 채무자이나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함
 -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채권채무관계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함
- 2008년 한해 동안 총 136,090건의 파산신청이 인용되었고, 이후 2009년 4월 말 현재까지 총 38,440건의 파산신청 중 26,882건이 인용됨

[표 8]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 변동 추이

(단위: 건)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4월말 |
|----|-------|-------|--------|--------|---------|---------|----------|-------------|
| 신청 | 1,443 | 5,521 | 15,266 | 38,779 | 123,691 | 154,039 | 118,643 | 38,440 |
| 인용 | 665 | 2,574 | 8,368 | 28,550 | 75,152 | 130,919 | 136,090* | 26,882 |

*전년도 누락사건에 대한 인용건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당해 신청수보다 인용건수가 높음

주: 인용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도 포함

자료: 법원행정처

[표 9] 현행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제도의 비교

| 구 분 | 사적 구제제도 | | | | 법적 구제제도 | |
|----------------|---|---|---|--|--|------------------|
|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채권집중프로그램 | |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 상록수 유동화 | 희망모아 | 신용회복 기금 | | |
|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신용평가정보 (자산관리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법원 | 법원 |
| 시행시기 | 2002년10월 | 2003년10월 | 2005년5월 | 2008년9월 | 2004년9월 23일 | 1962년1월 20일 |
| 대상채권 | 협약가입기관 보유채권 | 상록수 매입채권에 한정 | 희망모아 매입채권에 한정 | 기금 매입채권에 한정 | 제한 없음 (사채 포함) | 제한 없음 (사채 포함) |
| 채무조정 신청채무범위 | 5억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 제한 없음 |
| 채무조정 수준 | • 이자 감면 • 원금 최대 50%까지 감면 • 8년 이내 분할상환 | • 이자감면 • 원금감면 없음 • 5년 이내 분할상환 | • 이자감면 • 원금감면 없음 • 8년 이내 분할상환 | • 이자 감면 • 원금감면 없음 • 8년 이내 분할상환 | • 변제액이 청산 가치 보다 클 것 • 변제기간 5년 이내 | 청산 후 면책 |

<계 속>

| 구 분 | 사적 구제제도 | | | | 법적 구제제도 | |
|------------------------------|--|---------------------------|---------------------------|---------------------------|---|--------------------|
|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채권집중프로그램 | |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 상록수 유동화 | 희망모아 | 신용회복 기금 | | |
|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
| 법적 효력 | 사적조정에 의해 변제완료시 면책 | 약정에 의한 변제완료시 면책 | 약정에 의한 변제완료시 면책 | 약정에 의한 변제완료시 면책 | 변제 완료시 법적 면책 | 청산 후 법적 면책 |
| 은행연합회 '연체등' 정보 해제여부 |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모든 '연체 등' 정보 해제 | 해당기관의 '연체 등' 정보만 해제 | 해당기관의 '연체 등' 정보만 해제 | 해당기관의 '연체 등' 정보만 해제 | 변제계획 인가 시 해제 | 면책결정시 해제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조정 소액금융지원 취업알선 신용관리교육 등 의 사업을 함께 운영 | 개별약정 및 채권추심 | 개별약정 및 채권추심 | 개별약정 및 채권추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 제도는 2005.3.3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통합 제3편 : 파산절차, 제4편 : 개인회생절차 | |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Ⅳ. 주요국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

1. 미국

가. 사적 구제제도

- 1980년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소비자신용의 급증에 따른 파산의 증가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한 개인채무자 구제제도가 활성화됨
- NFCC(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ling)
 - 1951년에 설립된 지역 회원단체(CCCS)의 중앙연합회로서 회원단체 조직·활동 기준의 통일성 유지, 윤리성 및 공신력 제고기능 등을 수행하며, 메릴랜드주에 본부를 두고 있음
 - 비영리 기구로서 미국 전역에 150여개의 ‘○○지역 CCCS(Consumer Credit Counselling Service)’라는 명칭을 가진 회원 단체로 구성됨
 - 각 회원단체는 COA(Council of Accreditation)라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전문성 등에 대한 인증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1,425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COA는 1977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기구로서 가정·아동·건강·채무상담 단체에 대한 조직운영 및 서비스의 기준 제시 및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 CCCS의 기능
 - 채무관리프로그램(Debt Management Program) 운영
 - ◆ 채무자의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아 채권자들과 접촉하여 상환조건·일정 등을 조정하고 부채상환행위를 대행
 - ◆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에 의해 시행되며 채무자가 계획에 따른 월 채무상환액을 납부하면 이를 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배하여 상환
 - 채무관련 상담

- ◆ 채무자가 처한 사정에 따라 자율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 파산신청 등 법적 절차 안내 및 다른 종류의 사회복지기관 알선 등 다양한 성격의 상담 제공
 - 금융관련 교육
 - ◆ 지역주민을 상대로 재무계획 수립, 자금 차입 및 상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이 외에도 AICCCA(Association of Independent Consumer Credit Counselling Agencies), ACCC(American Consumer Credit Counselling), AFCC(American Family Credit Counselling) 등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

나. 법적 구제제도

- 법적 구제제도로는 「파산법(Bankruptcy Act)」과 채무자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재조정제도(Adjustment of Debt)를 시행하고 있음
- 2005년 10월 17일 개정된 「파산법」이 발효
- 2005년 개정 「파산법」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파산신청 기준의 강화, 비영리기구나 신용상담기구와의 신용상담 의무화, 파산 신청시 면책을 위한 신용 및 채무관리 교육 의무화, 신청서와 상환 스케줄의 적정성에 대한 변호사 확인 의무화, 면책범위의 축소 등을 들 수 있음
 - 구 「파산법」이 지나치게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제도의 남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 전반적으로 그 기준을 강화함
 - 또한 신용관리교육제도를 도입하여 개인파산 신청인이 파산신청 전에 재정·신용상담단체의 상담을 받을 것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필수요건으로 하는 등 법적 구제절차에 앞서 사적 구제절차를 이용하도록 함

2. 영국

가. 사적 구제제도

- 소비자상담국(CAB: Citizens Advice Bureau)은 영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소비자상담기구로서 1939년에 설립됨
 - 잉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에 약 2,000개의 CAB가 각각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으로 운영 중임
 - CAB는 매년 약 6백만 명의 소비자에 대한 채무, 주거, 실업, 법적문제 그리고 이민문제에 대한 해결 이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를 위해 채권자와 채무변제에 대한 협상 및 조정을 해주고 있음
- CCCS(Consumer Credit Counselling Service)는 미국의 CCCS를 모델로 1992년 설립됨
 -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에 각각 10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개인과 가계의 채무에 관한 상담 및 채무변제계획안 작성 지원 등을 수행함
 - 업무내용은 미국의 CCCS와 유사하여 채무자와 상담자의 대면(1:1)상담, 채무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채권자와의 협상 등임
 - 채무자가 CCCS에 채무상환금을 납부하면 CCCS는 다수의 채권자에 이를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나. 법적 구제제도

- 법적 구제제도로는 「파산법(Insolvency Act 1986)」¹⁰⁾과 청산이전의 공적 개입위크아웃제도로써 자발적 정리절차(Voluntary Arrangement)를 두고 있음

10) 영국은 법률체도의 독특성으로 인하여 잉글랜드 및 웨일즈지역에는 1986년에 개정된 「파산법(Insolvency Act 1986, IA)」이 적용되며, 스코틀랜드 지역에는 1985년 「스코틀랜드 파산법(Bankruptcy Scotland Act)」이 적용됨

- 자발적 정리절차(Voluntary Arrangement)를 통해 채무자의 청산 신청이 있을 시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정리안(Proposal)의 작성을 통한 자력갱생을 먼저 유도함
 - 채무정리안은 파산집행인(Insolvency Practitioner)의 감독 하에 작성되고 채권 사회의 의결 및 법원의 확인을 통하여 확정되어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음
 - 확정된 채무정리안에 따라 채무자는 채무를 성실이 이행해야 하며, 감독관은 이행 과정에서 채권·채무자의 이해를 조정하고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고 있음
 - 이행과정에서 채무자가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자발적 정리절차를 중단·종결함
- 교육기능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경제·금융교육 등 소비자 신용관리교육을 위한 교사양성, 교재 및 정보제공 등을 진행함

3. 독일

가. 사적 구제제도

- 독일에서는 특별한 사적채무조정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법적 구제제도인 「통합도산법」에서 소비자파산 신청시, 채무자는 재판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청산결정에 앞서 채무조정을 통한 자력갱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파산신청서류에 채무정리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법적 구제제도

- 독일은 1994년에 제정된 「통합도산법」을 통한 법적구제를 실시하고 있음

- 「통합도산법」은 청산절차와 갱생절차의 개시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양 절차를 일원화함
 - 이로서 경제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가 어느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어줌¹¹⁾
- 채무자가 독자적인 경제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환가할 재산이 미미한 경우, 일반파산절차로는 많은 절차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유연성이 없어서 부적절한 점을 감안하여 재판외의 합의시도와 재판상의 채무청산에 중점을 둠
- 그 외에 채무자의 즉시항고 기회를 확대하고 파산관재인인의 개입요건을 강화하는 등으로 기존의 도산법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음

4. 일본

가. 사적 구제제도

- 대표적인 민간단체로 ‘일본 크레딧 카운슬링 협회(JCCA)’가 있으며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와의 직접적인 해결을 중개하거나 법률적인 조정 및 파산절차에 대해 조언을 주는 민간기구로 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CCCS 등 미국의 비영리단체와 달리,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와 변제조건에 대하여 협상을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납부 받아 채무변제행위를 대행하는 등의 역할은 하지 않음
- 다중채무자의 구제를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차원에서 무료로 카운슬링서비스 제공
- 다중채무자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몽, 조사사업도 실시

11) 현정호(2008)

나. 법적 구제제도

- 일본의 법적 구제제도는 「파산법」, 「민사재생법」, 「특정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조정법」)로 구분되어 있으며, 「파산법」은 청산형인 파산과 특별청산을 규정하고, 「민사재생법」은 회생형인 회사재생, 민사재생, 회사정리를 규정하고 있음
 - 개인채무자는 「특정조정법」에 의한 특정조정과 「민사재생법」·「파산법」의 민사재생 및 자기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
 - 통상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적인 임의정리나 법원의 조정에 의한 정리가 가능하며,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됨
 - 특정조정의 적용으로 급여차압 등 민사집행 절차의 중지가 가능하며 자료제출 미비 시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파산 구제와 관련된 일본의 각종 제도는 다중채무자¹²⁾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중채무의 해결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 채권자 당사자 간의 임의정리를 우선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 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12) 다중채무자는 복수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변제가 곤란에 빠진 개인을 지칭함

5. 시사점

-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별로 민간, 정부 및 법원의 역할 분담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사적 구제제도와 법적 구제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 특히 미국과 영국의 경우 법적 구제제도의 진행에 선행하는 민간차원의 개인 신용회복을 위한 사적 구제제도가 발달되어 있음
 - 이는 법적 구제절차의 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고 법원심리 및 파산절차 진행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이에 비해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법원에 의한 법적 구제절차의 정비에 중점을 두면서, 법적 구제절차 이전에 사적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음
-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 법적 구제절차의 남용으로 인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의 방지 등을 위해서는 사적 구제절차와 법적 구제절차 간의 원활한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민간차원의 신용회복이 활성화되어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 10] 주요국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 | | 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 일본 | | | |
|----------------|-----------------|---------------------------------|---------------------------------|--------------------------|--------------------------|-------------------------------|--------------------------|------------------------------|--|
| 법적 구제 제도 | 개인 파산 제도 | 근거법률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 「파산법」 | 「파산법」 | 「통합도산법」 | 「파산법」 | | |
| | | 신청권자 | 채무자, 채권자 | 채무자, 채권자 | 채무자, 채권자, 채무변제계획에 구속되는 자 | 채무자, 채권자 | 채무자, 채권자 | | |
| | | 면책 | 신청자 | 채무자 | 면책신청 불필요 | 면책신청 불필요 | 채무자 | 채무자 | |
| | | | 절차 | 법원판결 | 파산절차 종료시(법원허가) | 파산선고후 1년뒤 자동면책 | 면책예고 후 유예기간(7년)경과시 | 법원판결 | |
| | 채무조정 제도와의 연계여부 | 연계성 없음 |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 기간으로 채무조정절차 유도 | 채무조정제도로 이관가능 | 파산신청시 채무조정제도 선행 의무화 | 연계성 없음 | | | |
| | 채무 조정 제도 | 근거법률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 「파산법」 | 「파산법」 | 「통합도산법」 | 「민사재정법」 | 「특정조정법」 | |
| | | 신청권자 | 급여영업 소득자인 채무자 | 정기소득자인 채무자 | 채무자 | 채무자, 채권자 | 급여영업 소득자 | 모든 채무자 | |
| | | 채무한도 | 총 15억원 (무담보5억원, 담보10억원) | 100만달러 (무담보75만, 담보25만달러)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3000 만엔 | 제한없음 (200만엔 이하 소득채무자가 주로 이용) | |
| | | 최소변제금액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100만엔 또는1.5 중 큰 금액 | 없음 | |
| | | 변제계획승인 | 법원판결 | 법원판결 | 채권자집회 참석자의 채권총액 3/4 이상 | 채권자 및 채무총액 1/2 이상 | 채권자 및 채무총액 1/2이상 | 전원동의 | |
| | | 상환기간 | 최장 5년 | 3년 (2년 연장가능) | 변제계획상 기간 | 변제계획상 기간 | 3년 (2년 연장가능) | 3년 | |
| | | 면책방법 |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직권 | 변제완료시 법원허가 | 변제완료시 자동면책 | 변제완료시 자동면책 | 변제완료시 자동면책 | 변제완료시 자동면책 | |
| | 민간신용회 복지지원기구 | 기구명칭 | 신용회복 위원회 | NFCC, AICCCA, AFCC 등 | CAB | ×(변호사 활용) | JCCA | | |
| | | 기능 | 채무조정, 상담 | 채무조정, 중재, 상담, 교육 등 | 채무조정, 중재, 상담, 교육 등 | . | 채무중재, 상담 (직접적 채무조정기능 없음) | | |
| 대상 | | 협약가입 금융기관 다중채무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 제한없음 | | | |
| 신용상담인력 | | 신용상담사 자원봉사자 (금융기관 경력자) | 신용교육을 거친 자원봉사자 | . | . | 변호사 및 신용상담사 | | | |
| 조직성격 | | 비영리 사단법인 | 비영리재단 | 비영리재단 | . | 비영리재단 | | | |
| 운영예산 | | 채권회수액 중 일부, 채무자 신청비, 유관기관 기여금 등 | 채권자 기여금 | 정부, 공공단체, 기업, 재단 기여금 | . | 신용카드협회, 백화점협회 및 통신판매협회 등의 기여금 | | | |

자료: 김준기 외 2인(2004)을 수정

V.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가.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의 미흡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 법원의 회생·파산 등을 통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사적 구제제도와 법적 구제제도간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는 어느 기관에서 신용상담을 해야 하는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 신용회복을 위한 구제절차의 이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한 상당수의 금융채무불이행자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으려 하게 되지만, 이에 따른 수수료의 부담 또한 신용상담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수시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실제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참여를 유발할 요인이 적어서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나. 신용회복기금의 법적 근거 미비

- 현행 신용회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KO)가 자산관리자로서 신용회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¹³⁾에 불과함
- 따라서 신용회복기금은 「국가재정법」 상의 기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형

13) 개발사업 또는 프로젝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의 시작과 함께 출범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해산되는 형태의 특수법인

태의 운영만으로는 채원부족,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 등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되어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적 보완사항

- 외국과 달리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절차 이전에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채무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한 채무자 구제는 법원심리 및 절차진행 등에 상당기일이 소요되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만큼 채권·채무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자발적 합의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사전 합의에 의한 채무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있음
 - 또한 사전적인 조정제도의 미비로 인해 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신속한 신용회복이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음
-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여 법적 구제절차 신청시 채권의 법률상·사실상 행사를 중지시켜 채무자에게 경제적 파탄에 대처할 시간적·정신적 여유를 줄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¹⁴⁾
 - 자동중지(automatic stay)제도는 다른 특별한 신청이 없더라도 도산절차의 신청과 함께 자동적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는 제도로서 미국 「파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절대우선의 원칙을 도입하여 채무자가 파산을 피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에도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절대우선의 원칙은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조(class)가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부동의한 조(class)에 속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모두 만족시킨 후에 후순위 조(class)에게 채무자의 재산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미국 「파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14) 장상준(2007)

2. 개선방향

가.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의 활성화

-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들과 변제력이 부족해서 곧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상담의 활성화가 필요함
 - 미국의 경우 CCCS와 같은 민간신용상담소가 지역 별로 그물망처럼 구축되어 있으며 상담소마다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신용상담을 통해 사전적·사후적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준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민간신용상담소들은 신용상담 뿐만 아니라 금융교육을 통해 사전에 신용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법률, 마약, 가족문제 등의 다양한 상담업무도 함께 수행함
 - 따라서 파산위험에 처한 채무자들이 지역의 민간신용상담소를 신뢰하고 우선적으로 방문해 조기에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 신용상담소의 설치형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됨
 - 제1안 : 다양한 형태의 민간신용상담소 설치를 장려하는 방안
 - 미국과 영국처럼 다양한 형태의 민간신용상담소 설치를 장려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신용상담을 활성화하는 방안
 - 다만 외국의 경우 정부, 공공단체, 기업 등의 기여금을 통해 민간신용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문제임
 - 또한 이는 사적분쟁해결을 중시하는 영미의 국민의식 및 법감정에 그 기반을 둔 제도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의 정착이 가능할지가 의문임
 - 제2안 : 정부 산하의 신용상담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법인 형태의 기관을 창설하는 방안

- 이를 통해 공신력을 확보한 신뢰도 높은 신용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부의 경제정책과의 일관성도 도모할 수 있음
- 다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확보 및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절차와의 관계 설정 등이 문제됨
- 제3안 : 현재 운영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업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역별로 상담소를 운영 중이며, 2009년 4월 30일 현재까지 약 289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상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인원 및 조직 확대와 보조금 지원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타 기관과의 균형문제 및 재원조달방안이 문제됨
- 제4안 : 법률구조공단이 신용상담업무도 담당하게 하는 방안
 - 현재 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이와 관련된 상담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 신용상담에는 법률문제상담이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법률구조공단의 주 업무는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로서 신용상담업무까지 전담하는 것은 권한의 비대화라는 비판이 가능하며, 신용문제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법적 구제절차 신청 시에 신용상담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¹⁵⁾
 - 신용상담의무를 파산선고의 요건으로 하여 파산신청시의 첨부서류로 채무자의 신용상담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안
 - 미국의 개정 「파산법」이 신용관리교육제도를 도입하여 개인파산 신청인이 파산신청 전에 재정·신용상담단체의 상담을 받을 것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필수요건으로 한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15) 이해리(2007)

-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이 보다 큰 신용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정 시간의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현재 미등록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신용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의 JCCA는 다중채무자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몽, 조사사업을 다각도로 실시하고 있음

나. 신용회복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 신용회복기금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법정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2009년 4월 8일 권택기 의원 등 14인이 이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임
-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융소외계층의 건전한 경제활동 주체로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과 신용회복기금의 설치를 목적에 추가함
 - 공사 정관상 신용회복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공사의 신용회복기금 업무 및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함
 - 신용회복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사 업무규정에 추가하여 공사의 신용회복기금 업무 및 활동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함
- 한편, 신용회복기금의 법정기금화에 있어 기금의 재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주체의 적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

-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와 재판 외 분쟁처리절차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¹⁶⁾
 - 당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있었으나 삭제된 사항으로 개인채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방안이 있었음
 - 조정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를 통해 사전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하지만 이러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의 활성화에 대한 장애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며, 법치주의원칙과 상충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삭제됨
 - 일본은 이러한 이유로 「특정조정법」을 통해 법원의 주도로 신속하고 일괄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 이로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가 가지는 경직성을 보완하고 사전 채무조정절차를 통한 신속한 채무자 구제를 도모함
 - 다만 일본의 「특정조정법」은 법원의 조정에 강제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음
 - 또한 파산절차 개시 전 합의형 사전절차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독일의 「통합도산법」이 소비자파산 신청시 채무자가 재판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와 합의를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고, 청산결정에 앞서 채무조정을 통한 자력갱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파산신청서류에 채무정리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영국에서 채무자의 파산신청시 법원이 채무정리안의 작성을 통한 자력갱생을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이렇게 확정된 채무정리안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채무자가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비로소 자발적 정리절차를 중단·

16) 박덕용(2009)

종결하고 파산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법무부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개정안의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도산절차를 신청하면 그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는 자동중지제도의 도입
 - 채무자가 파산을 피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에도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절대우선의 원칙의 도입
 - 주택 담보 채무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켜 담보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개선하여 서민들의 주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의 도입
 -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 조사·확정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도유망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는 방안의 도입
 - 재산을 은닉한 뒤 도산절차를 신청하는 절차 남용행위를 조사하고 회생절차의 공정한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선진형 도산 감독기관의 도입

참고문헌

- 김승년 외 2인(2006), “주요국 공적 개인신용회복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경제경영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6.12
- 김용범(2005),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나라경제』 제174호, KDI경제정보센터, 2005.5
- 김재룡(2004), “신용불량자의 증가에 따른 배드뱅크 출범의 시사점”, 『대은경제리뷰』 제190호, 대구은행경제연구소, 2004.7
- 김준기 외 2인(2004),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 2004.5월호, 한국은행 조사국, 2004.5
- 대법원(2009), 제출자료
- 류지혜(2008), 『소비자금융위기 지원제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2008.8
- 박덕용(2009),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고찰』, 부산대 대학원, 2009.2
- 박재완(2007), “일본의 특정조정절차에 관하여 : 도산과 ADR”, 『법학논집』 제24집 제2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7.7.30
- 신용회복위원회(2005), “각국의 소비자회생제도”, 2005.12
- 신용회복위원회(2009), 제출자료
- 신용회복위원회(2009), “업무현황”, 2009.5
- 오제세 의원실(2005),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개선방안”, 『2005년 국정감사 정책제안서』, 2005.10.10
- 우세나(2005), 『개인도산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2005.2
- 이승훈(2006), 『통합도산법상 면책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2006.8
- 이혜리(2007), “개인파산에 있어서 신용상담제도 도입의 필요성”, 『비교사법』

- 제14권 제37호, 한국비교사법학회
- 장상준(2007), 『통합도산법에서의 개인파산에 관한 연구 : 면책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 법무대학원, 2007.2
- 전국은행연합회(2009), 제출자료
- 전국은행연합회(200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
- 주선아(2006), “통합도산법에서 소비자파산제도의 내용과 개선방향”, 『법조』 제596호, 법조협회, 2006.5.1
- 현정호(2008),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2008.2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 호 수 | 제 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1호 | 태안 기름누출사건에 따른 국가 위기대응태세점검 및 향후대책 | 2007.12.18 | 김종연 최준영 |
| 제2호 | 국제지명표준화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표기문제 및 대응방안 | 2008. 7.31 | 김종연 최준영 |
| 제3호 | 인터넷 실명제 쟁점 | 2008. 8.28 | 김여라 |
| 제4호 | 한·미 방위비 분담의 현황과 쟁점 | 2008. 8.28 | 김영일 신종호 |
| 제5호 |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 2008.10. 6 | 원시연 |
| 제6호 | 2008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2008.10. 8 | 김준 외 7인 |
| 제7호 | 미국의 대북제재현황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영향 | 2008.10.15 | 이승현 |
| 제8호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입법부의 과제 | 2008.10.31 | 하혜영 외 6인 |
| 제9호 | 오바마시대 개막의 의의와 시사점 | 2008.11. 6 | 김준 외 7인 |
| 제10호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검토 및 쟁점 분석 | 2008.12. 8 | 박준환 |
| 제11호 | 군경력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의 쟁점 | 2008.12.10 | 조규범 |
| 제12호 |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심의규정의 검토 및 개정방향 | 2008.12.11 | 정민정 김남영 |
| 제13호 |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 | 2008.12.11 | 이유주 |
| 제14호 | 인터넷 전화와 번호이동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2008.12.11 | 박 철 |
| 제15호 |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방안 | 2008.12.12 | 김 준 배민석 |
| 제16호 |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논의와 주요 쟁점 | 2008.12.22 | 원시연 |
| 제17호 | 주식 공매도 현황 및 개선방안 | 2008.12.29 | 박충렬 |

| 호 수 | 제 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18호 | 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선 : 개별급여 방식을 중심으로 | 2008.12.30 | 유해미 |
| 제19호 | 국가대표선수 은퇴 후 진로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현황 및 발전방향 | 2009. 1. 7 | 김신애 |
| 제20호 | 국회 및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 2009. 2. 6 | 전진영 |
| 제21호 | 선상투표제도 도입관련 쟁점 및 시사점 | 2009. 2.20 | 김종갑 외 3인 |
| 제22호 |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향 | 2009. 2.23 | 조규범 |
| 제23호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 | 2009. 4. 1 | 유재국 |
| 제24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위헌 판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후속조치 검토 | 2009. 4. 1 | 박준환 |
| 제25호 | 정치자금 소액기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 2009. 4.14 | 조만수 |
| 제26호 |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입법개선방향 | 2009. 4.16 | 김선화 |
| 제27호 |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현황과 쟁점 | 2009. 5.11 | 정민정 |
| 제28호 |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 | 2009. 5.15 | 이만우 |
| 제29호 |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과제 | 2009- 6. 2 | 정종선 |
| 제30호 | LED 조명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 2009- 6.30 | 유재국 이상은 |

현안보고서 제31호

발 간 일 2009년 7월 9일
발 행 임종훈
편 집 경제산업조사실 금융외환팀
기획관리관 기획협력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788·4524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1.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자료마당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ISSN 2005-3215

발간등록번호 31 -9735024-000636-14

© 국회입법조사처, 2009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R e s e a r c h S e r v i c e

NARS 국회입법조사처
150-70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www.nars.go.kr / 02)788-4510

| ISSN 2005-3215 |